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30.
북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1. 16.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1. 11. 17.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1. 11. 3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교육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존 조례의 명칭 변경

- 기존 교복 지원 조례의 명칭을 입학준비금 시행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교복 지원 →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변경)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규정(안 제3조 ~ 제4조)
-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검토보고 (박춘주 전문위원)

- 본 조례개정안은 마포구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등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격차의 최소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입학준비금이란 지원대상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교복 등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 마포구에서는 2018년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구비 100%를 부담하여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서울시 교육청(50%) - 서울시(30%) - 자치구(20%)간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범위 등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지원대상은 금년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것임.

〈 마포구 교복지원 · 입학준비금 연도별 사업 집행 및 예산 현황 〉

구분	연도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 인원	지원 총액	비 고
교복 지원 사업	2019	중학생	30만원 (현금)	2,433명	723,759천원	구비 100%
	2020	중학생	30만원 (현금)	2,696명	761,247천원	구비 100%
입학 준비금	2021	중고등학생	30만원 (제로페이 상품권)	4,931명	300,278천원	50%:30%:20% (교육청:시:구)
	2022	초·중·고등 학생	초등 20만원 중고등 30만원 (제로페이 상품권)	6,867명 (예정)	414,739천원 (예산 편성)	초등 40%:30%:30% (교육청:시:구) 중고등 50%:30%:20% (교육청:시:구)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입학준비금 시행으로 인한 기존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고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입학준비금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와 제4조는 입학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규정으로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입생이 입학준비금이 지원되지 않는 타 시·군·구 소재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안 제5조와 제6조는 입학준비금 지원신청 등 지원절차와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 효율적인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등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나 다른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으로 시행되는 입학준비금 제도는 주민들의 가계소득 격차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초·중·고등학교 입학대상자에게 보편적 교육복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 위배사항이나 자구 등에도 문제가 없음.

※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2.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 ⑦ 생략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4조(지원금액) 및 제7조(다른기관과의 협력)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20년도 서울시 복지대타협 TF 추진 결과를 반영한 2021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입학준비금 전면 시행에 의거, 마포구 관내 중·고등학교 연도별 입학생 수에 따른 분담액 지원 (교육청비 50%, 시비 30%, 구비 20%)
- 나. 마포구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 다. 비용추계기간 : 2022. 1. ~ 2026. 12. (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비 보조금	-	-	-	-	-	-
	구비 보조금	260,065	273,068	286,721	301,057	316,109	1,437,020
	소계(b)	260,065	273,068	286,721	301,057	316,109	1,437,020
□ 총 비용(a-b)		260,065	273,068	286,721	301,057	316,109	1,437,020

※ 연도별 1학년 입학생 인원 추이 변화에 따라 분담액 증감될 수 있음

4. 재원조달 방안

가. 마포구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분담 비율에 따라 구비 분담액 지원

5. 덧붙이는 의견

가.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오재은 (☎ 3153-859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